

제22장 분쟁해결

제1절 분쟁해결

제22.1조 협력

-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 이 장에 따라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모든 해결방안은 이 협정과 합치하고,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2항에 따라 도달한 해결방안은 당사국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22.2조 적용범위

-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들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8장(정부조달) 또는 제10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 당사국은 제23.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1항다호를 원용할 수 없다.

제22.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분쟁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22.4조 협의

1. 하나 이상의 중미 공화국은 한국, 또는 그 반대로, 다른 당사국들에 사본과 함께 지정된 사무소를 통하여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2.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요청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

2. 협의는 직접 대면 또는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으며, 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고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가 요청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당사국들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요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동안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추후 어떠한 분쟁해결절차에서도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 한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¹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 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고,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각각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나, 협의가 종결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22.5조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5. 협의 당사국들은 이 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한쪽 당사국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관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그 밖의 모든 절차에서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패성 상품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한다. 계절 상품이란, 그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 중, 연중 분산되지 아니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 해의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상품이다.

제22.5조 공동위원회 회부²

- 당사국들이 제22.4조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협의 요청 당사국만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다.
- 공동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10일 이내에 회합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 공동위원회는 병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동일한 조치 또는 사안과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절차를 결합할 수 있다.

제22.6조 주선, 화해 또는 조정

-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주선, 화해 및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 주선, 화해 및 조정과 관련된 절차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다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이 조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은 이러한 절차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 주선, 화해 또는 조정을 위한 절차가 당사국들 간 합의 없이 종결되면, 제소 당사국은 폐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7조 폐널의 설치

- 사안이 다음 경우 중 어느 경우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분쟁해결폐널을 설치하는 서면요청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
 - 분쟁 당사국들이 제22.4조에 규정된 60일 기간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

² 이 조의 목적상, 공동위원회는 부속서 21-가(공동위원회)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협의 당사국들의 대표 또는 협의 당사국들이 지정한 인으로 구성된다.

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우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20일 이내에, 또는 당사국들이 협의 중에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협의 중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22.5조에 따라 절차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가장 최근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가 회합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다.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또는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2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 라.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요청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만료하면, 제22.5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요청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요청의 사유를 명시한다.
3. 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요청서의 접수일에 설치된다.
4. 제1항에 따라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 서면 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중재패널절차에 제소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통보는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의 패널설치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5. 당사국이 제4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경제적 또는 상업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가호 및 나호를 개시 또는 지속하는 것을 삼간다.
- 가. 이 협정 하의 분쟁해결절차,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또는 이 협정상의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자유무역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
6.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이 장의 규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7. 패널은 제안된 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되지 아니한다.
8.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 당사국들은 패널을 선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1인의 패널위원을 지명한다.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10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민인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 다. 당사국은 후보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그 개인이 패널위원으로 제안된 후 14일 이내에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기피권을 3회 행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후보명부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 라. 당사국들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 마. 당사국들이 두 번째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 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들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10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그리고³
- 바. 패널위원은 그 인이 나호에 따라 제안되고 다호에 따른 기피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인이 이 항에 따라 후보명부에서 선정되는 때, 패널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9.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소 당사국 또는 피소 당사국이고 패널위원 선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8항나호에 규정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을 대표한다.

10.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사국들은 패널위원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의 후보명부를 작성한다.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후보명부는 각 당사국의 국민 3인과 당사국들의 국민이 아닌 개인 최소 8인을 포함한다. 후보명부상의 개인은 최소 3년의 임기로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후보명부에 존치된다. 당사국들은 3년마다 후보명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명부상의 개인을 대체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후보명부의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체자를 또한 임명할 수 있다.

11.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패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후임자가 원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명되고, 그 후임자는 원래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원래의 패널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새로운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된다.

12. 제8항에 따라 패널에 또는 제10항에 따라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³나호 또는 마호에 따라 추첨으로 선정된 패널위원이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들은 후보명부의 나머지 구성원으로서, 관련 당사국의 국민인 자 중에서(나호의 경우) 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자 중에서(마호의 경우) 추첨으로 다른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그 패널위원이 이용 가능하지 아니함을 안 때부터 7일 이내에 회합한다. 패널위원이 절차의 과정 중에 또는 패널이 제22.12조나 제22.13조에 따라 재소집 되는 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알게 된 때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은 후보명부에서 대체 패널위원을 선정하고, 의장의 경우에는, 당사국들이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대체의장을 추첨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 다. 어떠한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공동위원회가 제정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13. 분쟁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협의하며,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그 패널위원은 해임되고 새로운 패널위원이 이 조에 따라 선정된다.

제22.8조 모범 절차규칙

1.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공동위원회가 제정한 모범 절차규칙을 따르며,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나. 바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 다. 절차 수행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이용 가능성
- 라. 각 분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 마. 바호를 조건으로 각 참여 당사국의 서면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요청이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공개되도록 할 것
- 바. 어떠한 당사국에 의하여 비공개로 취급하도록 지정된 정보의 보호, 그리고
- 사. 당사국들에 대한 모든 통보가 지정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모범 절차규칙을 준수하고, 당사국들과의 협의 후, 모범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22.10조제1항 및 제22.10조제2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 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22.10조제1항 및 제22.10조제5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4. 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분쟁 당사국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5. 보고서의 채택을 포함하여 패널의 결정은 그 구성원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어떠한 패널도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제22.9조

제3당사국

1. 패널에 회부된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분쟁 당사국들 및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당사국은 서면입장을 패널에게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그러한 서면입장은 분쟁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되며 패널의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
2. 제3당사국은 패널의 최초 회의에서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을 받는다.
3. 제3당사국이 이미 패널절차의 대상이 되는 조치가 대상협정상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또는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이 협정상의 정상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22.10조 패널 보고서

1.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들에 제출한다.
 - 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 2) 분쟁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2.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 나. 패널이 다루도록 분쟁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대한 사유
2. 패널이 패널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은 서면으로 지역 사유와 패널보고서 예상 제출기간을 분쟁 당사국들에 알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 보고서는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패널은 제소 당사국 또는 제소 당사국들의 최초 서면제출 후 7일 이내에 이 항에 따른 어떠한 결정을 분쟁 당사국들에 알리고, 잔여 일정을 그에 따라 조정한다.
3.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당사국들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에 규정된 것과 같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분쟁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각 분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5.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당사국들에 제출한다. 당사국들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6.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며 구속력

이 있다. 패널 보고서는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제22.11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분쟁 당사국들은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쪽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패널은 재개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분쟁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패널의 절차를 종료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패널의 의장에게 통보한다.
3.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 당사국들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제22.12조 최종 보고서의 이해

1. 패널의 최종 보고서를 접수하면, 분쟁 당사국들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판정과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분쟁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거나 분쟁 당사국의 조치가 제22.2조제1항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22.13조 불이행 및 혜택의 정지

1. 패널이 제22.12조제2항에 기술된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분쟁 당사국들이 최종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또는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수용 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분쟁 당사국들이
 -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 나. 보상 또는 제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로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

다고 제안하는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분쟁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5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후 15일 이후에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어떤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제22.2조제1항다호의 의 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 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도록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나.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혜택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 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4.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정되거나 제22.2조제1항다호상의 혜택을 달리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게 된 때까지, 또는 분쟁 당사국들이 그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그러한 때까지 한정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피소 당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중미 공화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미 공화국이 최종 보고서를 준수하거나 제소 당사국과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중미 공화국 또는 공화국들에 대하여 혜택의 정지를 종료한다.

5. 피소 당사국이

-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원심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의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는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분쟁 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6.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5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중미 공화국으로 이루어졌으며, 패널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미 공화국이 준수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즉시 그러한 중미 공화국 또는 공화국들에 대하여 혜택의 정지를 종료한다.

**제22.14조
이행 검토**

1. 제22.13조제5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2.13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제22.15조 기한

1. 패널이 판정을 제출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기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날이 된다.
2.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당사국들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22.16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1. 각 당사국은
 - 가. 이 장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위원회가 지시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지정한다.
 - 나.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지정 사무국의 위치를 통보한다. 그리고
 - 다. 다음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1) 자국이 지정한 사무국의 운영 및 비용, 그리고
 - 2) 부속서 22-가에 규정된 패널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보수 및 비용 지급

제2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22.17조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로부터의 사안 회부

1. 한쪽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당사국이 그 절차에 대한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한쪽 당사국의 견해를 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조속히 적절한 대응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합의된 해석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규칙에 따라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3. 공동위원회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규칙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자국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18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어떠한 다른 당사국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소권을 규정할 수 없다.

**제22.19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적 당사자 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사용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중재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쟁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3. 당사국이 「1958년 외국 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자이면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22-가
보수 및 비용의 지불

1. 공동위원회는 패널위원과 전문가에게 지불될 보수와 비용의 총액을 산정한다.
2.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원, 전문가의 보수,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비용은 분쟁 당사국들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3. 각 패널위원 및 전문가는 본인의 시간 및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결산보고를 한다.